



판매원등록신청서 (Distributor Agreement)

※ 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반드시 당사가 제공한 거래에 관한 약관(뒷면)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매원 본인이 직접 아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판매원 등록번호 Distributor ID#	
-----------------------------	--

○ 판매원신청인 기재란 ※수당입금은은행계좌가 신한은행 이외의 경우, 수수료(건당) 500 원이 차감됩니다.

한글성명 (Korean Name)		주민등록번호 (Social Security#)	
영문성명 (English Name)		이 메 일 (E-mail)	
자택주소 (Address)			
자택전화 (Phone#)		휴대전화 (Cell Phone#)	
거래은행 (Bank Name)		예금주성명 (Name on Account)	
계좌번호 (Account #)			

소개인 (추천인) 정보 Sponsor	성명 (Korean Name)		판매원등록번호 (ID#)	
	영문성명 (English Name)		이 메 일 (E-mail)	
	주민등록번호 (Social Security#)			
	자택전화 (Phone#)		휴대전화 (Cell Phone#)	

● 본인은 ㈜에나직크의 판매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 회사의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본인의 귀책으로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과 귀사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귀사의 판매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였기에 귀사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 받는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부동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5 조 제 3 항, 제 5 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회원수첩 수령여부 수령 미수령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인적사항 : 등록회원의 회원번호(ID)는 등록과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회원번호는 등록회원의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사용될 것 입니다.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등록회원의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전체 계약을 무효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본 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 ②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거래은행통장 사본 1부 ④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

● 위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정된 범위내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제공·이용하도록 동의합니다.

● 등록신청서의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자필로 서명하십시오.

일 자 : (Date)	신청인 : (Distributor)	(인/서명) (Signature)
-----------------	------------------------	-----------------------

(주) 에 나 직 크 대 표 이 사 Hong Jack Sung Yong



*** 단단계판매원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단단계판매원으로 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주에나직크(이하 "회사"라 한다.)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단계판매원 등록**

"회사"에 단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단단계판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단단계판매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단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 5. 미성년자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단단계판매원 자격취득**

신청인은 "회사"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단단계판매원 수첩, 단단계판매원 안내서 및 기타사항을 교부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단단계판매원으로 인정될 것임을 숙지하십시오.

*** 소유권 귀속**

1.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주에나직크에 대금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주에나직크의 소유로 하며,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판매원의 소유로 합니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단단계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행위**

"회사"의 단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단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단단계판매원을 단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단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단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단단계판매조직 및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지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4.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등 그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비용 또는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17. 사회적인 관계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유인하는 행위 2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 단단계판매원탈퇴**

탈퇴를 원하는 단단계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단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가 기타 "회사"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등**

단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단계판매원은 "회사"에게 재화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1. 아래 각항의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판매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나. 회사관련(회사, 임직원, 제품, 정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및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경우
다. 동종의 회사(단단계, 방판, 보험사, 상호회사 및 기타 유관업종의 회사)에 가입 또는 취업할 경우
라. 본인 하위에 타 영업조직의 판매원들을 유인하여 등록시키는 행위, 라인변경을 위하여 치명 등록 활동행위, 탈퇴를 종용하여 재가입 시키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마. 판매원의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 상호간의 고소, 고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흐트린 경우 바. 기타 상도덕적인 위반 및 회사 업무 활동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 및 영업 관련 사항 등을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에는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원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야 합니다.

*** 소비자(환불)규정**

1. 소비자(등록 단단계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센터(전화: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 조 제7 조 제1 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등록된 단단계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 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 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등록단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단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단단계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5. 설치상품의 경우 설치 후 반품이 불가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 조)**

-공급일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상품대금의 5%상당금액
-공급일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상품대금의 7%상당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재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합니다.**

*** 단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단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판매원:구매계약 후 3개월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소비자:구매계약 후 14일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은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단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및 02-2058-08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단계판매원 탈퇴 신청서 등록일 20 년 월 일
성명 _____ 회원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탈퇴사유 _____
상기본인은 년 월 일부로 (주)에나직크의 단단계판매원을 탈퇴합니다.
신청인: _____ (인/서명) (주)에나직크 대표이사 귀중